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버ㅎ	2015	~	58
면호			

제를	출연원	일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 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1조제3항)
-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안 제13조제1항)
 - 삭제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1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의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u><신 설></u>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 그스노 레크레 메크 카트시아니즈그어 ○	<u>요청이 있는 경우</u>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건 버건 ㄸㄴ 최소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u>지정·변경 또는 취소</u>			
이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1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1. 2지정·변경 또는			
및 목적	취소			
3. ~ 4. (생략)	<u>기=</u>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			
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	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기서교 이치서 지점점이 여하는 바느 전투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				
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② ~ ⑤ (현행과 같음)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⑤(생략)